

(1) 申請者が 外國에 住所를 가진者일 것.
 (2) 消防用機械器具 등의 形狀 構造 材質, 成分 및 性能에 대한 檢査業務 (次號에서는 檢査業務라고 함)를 適正 또한 確實히 實施하기 위해 必要한 技術的能力 및 經理的 基礎를 가지고 있을 것.

(3) 申請者が 檢査業務以外的 業務를 하는 경우에는 그 業務를 行함으로 인해 檢査業務가 不公正이 될 염려가 없을 것.

(4) 申請者が 다음의 例擧한 者에 該當하지 않을 것.

㉠ 指定이 取消되어 그 取消日로부터 起算하여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法人으로서 그 役員中에 ㉠에 該當하는 者가 있을 때.

6. 協會는 令第41條 第2項의 外國檢査機關의 指定을 하고 또는 指定을 取消할 때는 之 無事로 그 事由를 自治大臣에 報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44條 削除.

外國檢査機關의 檢査데이터 (data)를 받아들인 (受理)는 制度 (解說)

消防庁 豫防救急課 國際規格対策官
 小林 恭一

금년 4월부터 消防用機械器具 등에 관한 檢査制度에 있어서 外國檢査機關의 檢査데이터를 받아들인는 제도가 시작됐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10분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자가 많은 것 같아서 本稿에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내용을 해설하고자 한다.

문 1. 4월 1일부터 UL이나 FM의 檢査에 합격한 소화기 등은 자유롭게 일본에서 수입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답. 아닙니다. 비록 UL이나 FM의 檢査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일본소방법에 따라 日本消防檢定協會 (이하協會라한다)의 檢定을 받지 않으면 消防用機械器具 등을 일본국내에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문 2. 그러면 外國檢査機關의 檢査데이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신뢰할 수 있는 外國檢査機關이 일본의 소방법에 의한 규격 (所謂規格省令)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가 그 시험 결과를 신뢰하고 재차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3. 신뢰할 수 있는 外國檢査機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간의 시험기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답. 消防檢定協會는 소방법에 의해 消防用機械器具 등의 유일한 檢定機關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그 능력 공평성 등에 대해서도 법령으로서 직원의 자격과 의무 등을 비롯하여 유일의 檢定機關으로서 협회가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엄격히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檢査데이터를 받아들인게 되는 外國檢査機關도 우리나라 消防檢定協會 정도의 능력과 공평성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소방청에서는 消防法施行規則 제 43조 제 2항에서 능력과 공평성에서 문제있는 外國檢査機關의 檢査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하고 작년 12월 15일에 소방청 차장명의로 협회에 대해 外國檢査機關의 구체적 요건등을 통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基本指針)” 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外國檢査機關의 능력과 공평성에 관한 요건등을 列記한 것으로 外國檢査機關이 일본의 소방법에 의한

규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기위한 적절한 방법등도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공적시험기관이라야 할 필요도 없이 외국의 민간의 검사기관의 검사데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 4. 신뢰할 수 있는 外國檢査機關이란 어떻게 결정합니까? UL 등의 유명한 검사기관의 검사데타라면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답. 비록 UL이라도 協會가 그 검사데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협회에 검사데타를 받아들이도록 하고싶은 外國檢査機關은 우선 협회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는 그 신청에 따라 當該外國檢査機關의 능력과 공평성등을 심사하여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충족되었다면 협회가 검사데타를 받아들여 外國檢査機關으로 지정하고 검사방법과 서류의 구비방법과 쌍방의 의무등을 포함한 협회와 當該外國檢査機關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국제적인 認證制度하에서 消防用機械器具 등의 檢査機關으로서 충분한 실적을 가진 外國檢査機關에 대해서는 심사시 심사사항을 간략화하고 있습니다.

문 5. 외국의 소화기등의 제조업자가 外國檢査機關을 활용해서 일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답 (1) 외국제조업자는 우선 협회와 “검사데타”의 받아들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검사기관(이하 지정外國檢査機關이라 한다)에 일본이 수출하고자 하는 消防用機械器具등에 대해 형식시험을 위한 檢査데타작성의 의뢰를 한다.

(2) 지정外國檢査機關은 의뢰가 있으면 當該消防用機械器具에 대해 일본의 規格省令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것과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고 검사데타를 작성하여 의뢰자인 외국제조업자에 교부한다.

(3) 외국제조업자는 當該檢査데타를 첨부하고 1개의 견본품과 같이 협회에 형식시험의 신청을 한다.

(4) 협회는 첨부된 검사데타와 1개의 견본품에 의해 型式試驗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자에 통지한다.

(5) 그후의 신청자로부터의 自治大臣에 型式承認申請 및 기타수속은 國內製造業者와 동일하다.

(6) 개별검정의 실시방법도 전항과 같다. 指定外國檢査機關이 협회가 실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拔取檢査를 행하고 그 個別檢定에 관한 검사데타를 작성하여 外國製造業者에 교부함으로써 個別檢定을 한것으로 된다.

문 6. 대단히 복잡한것 같습니다. 外國製造業者에 있어서는 指定外國檢査機關을 活用함으로써 메리트(merit-利點)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 指定外國檢査機關은 協會와 계약을 체결한 이상은 일본의 검정제도의 제도와 規格에 대해 熟知하게 됩니다. 外國製造業者는 이와 같은 검사기관에 일종의 컨설팅(Consulting: 相談 助言)을 받으며 또한 자국어어로 사실상의 시험을 받을 수 있으므로 利點(merit)은 충분이 있습니다.

문 7. 반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만 협회가 받아들이는 “검사데타”는 어디까지나 일본국내의 규격에 따라야 하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타국이나 타기관의 규격에 따라 검사데이터를 받아들이면 日本国内規格의 일원성이 무너지고 소방법의 체계가 흐트러집니다. 현행의 소방법을 전제로 한 제도입으로 일본규격에 따른 검사규격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문 8. 그러면 “工業製品の輸入促進”을 위해서는 “外國検査데이터의 받아들임”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까?

답. 소화기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소화기는 결국 소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시험기관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그 결과는 전문가가 보면 소화성능이 충분한지를 판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으며 새삼스럽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있습니다. 製品을 실제로 제작하던지 검사에 당해본 사람이면 이러한 생각은 난폭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소화시험용의 모형의 재질이나 형상이 다소 변경됨으로서 소화기의 성능이 크게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시험방법이 상이하거나 또한 규격의 일원성을 유지하기가 실제로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IOC(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각국 규격의 末稍라고 생각되는 미세한 문제로 激論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諸外國이 일본의 규격을 고치라는것은 아니다. 일본의 규격에 따라 검사데이터를 수리한다는 금번의 조치는 일본의 규격을 바꾸지 않고 규격의 일원성의 유지를 전제하는 조치이다. 외국제조업자가 消防用機械器具등을 일본에 수출코저 할때 만약 현재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일본의 규격에 맞지 않는다면 제품을 새로 개발(조금만 개조해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UL認定을 취득한때는 UL이 실시한 시험 결과를 첨부해오더라도 협회가 그냥 그대로는 수리할 수는 없다. 외국검사데이터의 수리는 “문5”에서 설명한 수속을 해야하며 수리의 의의는 “문6”에서 말한바와 같다. 가까운 장래에 消防用機械器具등의 국제규격이 ISO에서 정하여지고 각국과 일본이 자기 규격을 국제규격으로 통일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외국의 제조업자가 제작한 제품은 모두 일본의 규격에 적합할 것이며 역으로 일본제품도 외국의 규격에 합치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外國検査機關의 검사데이터의 制度受理는 消防用機械器具등의 국제유통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생각한다면 ISO에서 국제규격의 검토가 이 제도의 創設로 인해 한층 그 중요성을 증가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일본이 관계자모두가 ISO 규격작성에 적극 參畫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外國検査데이터의 受理에 대하여

1985年 5月 30日

協會가 消防法施行令 第41條(消防用機械器具등에 대한 시험 및 個別檢定の 手數料) 同施行規則 第35條(消防用機械器具등에 대한 시험에 관한 신청서 및 수수료) 同第43條(外國検査機關의 指定) 및 1984年 12月 25日 字 소방청 第168號 日本消防檢定協會理事長에게 消防廳次長通知(外國検査機關의 指定에 대하여)에 따라 외국검사기관의 지정업무 및 當該検査機關이 발행한 “검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검정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정비할 규정등의 제정 개정에 대한 概要는 다음과 같다.

